

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

동물등록 변경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뒷면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고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※ 변경사항란은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 7일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

신고인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)	
동물관리자 (신고인이 법인인 경우)	성명	직위	전화번호
동물	이름	동물등록번호	

변경사항	구분		변경 전	변경 후
	[] 소유자 변경 [] 소유자의 정보변경	성명(법인명)		
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)				
주소				
전화번호				
[]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됨	동물등록번호			
그외	[] 등록동물을 잃어버림 []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음 [] 등록동물이 죽음 []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음 [] 그 밖의 사유			

변경사항 발생일

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
그 경위(날짜, 장소, 사유 등)

「동물보호법」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동물등록증	수수료 무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개인인 경우: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. 법인인 경우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종질지(80g/m²)]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[동의]

1.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의 정보와 신고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2. 유기·유실동물의 반환 등의 목적으로 등록동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1.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를 모두 작성합니다.
2. 소유자의 정보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목만 작성합니다.
3. 동물의 이름 등 등록동물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의무는 없으나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4. 잃어버린 등록동물의 정보는 동물정보시스템에 공고됩니다.
5.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,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,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,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은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6.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사유로 변경신고 후 1년 동안 등록동물을 다시 찾은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.
7. 등록동물이 죽은 사유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.

처리절차

